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이해식 · 박상혁 · 서영교
서영석 · 한병도 · 천준호
김교홍 · 위성곤 · 김성환
허영 · 한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

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감축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u> <u>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u> <u>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u> <u>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u> <u>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u> <u>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u> <u>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u> <u>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u> <u>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u> <u>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u> <u>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감</u> <u>축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u> <u>한다.</u> <u>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u> <u>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u> <u>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u><신 설></u>	<u>제8조의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u> <u>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u> <u>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u> <u>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u>

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